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8
----------	------

발의연월일 : 2010. 2. 10.

발의자 : 심정구 의원외 7인

□ 개정이유

- 정비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미관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 구역에서는 별도의 일반미관지구 폐지 절차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르도록 함.(안 제39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타시군 조례 현황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로티를 포함하여 5층 이하(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음)로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정비구역은 그 계획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 3. 일반미관지구 : 4층 이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로티를 포함하여 5층 이하(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음)</p>	<p>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 -----</p> <p>1. ~ 2. (현행과 같음) 3. 일반미관지구 : 4층 이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로티를 포함하여 5층 이하(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음)로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 라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정비구역은 그 계획에 따른다.</p>